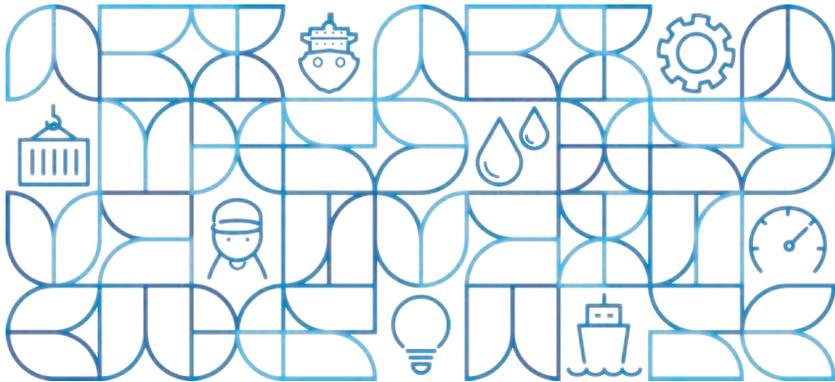


ULSAN PORT

# UP

## 2023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



##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인센티브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사</li> </ul>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항에 입항한 G/T 3천 톤 이상 외항선 중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대상 선종(6종)의 선박으로서, Port-MIS에 저속운항 참여를 신청하고 울산항 저속운항해역에서 선종별 권고 속도 준수 등의 저속운항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준수한 선박</li> </ul>																
인센티브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환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항목 :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 제외)</li> </ul> </li> <li>2023년 예산 : 5억 원</li> </ul>																
지급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납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환급</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종(Port-MIS Code)</th> <th>권고속도</th> <th>선박입출항료 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27)</td> <td>12knot</td> <td>30% [계절관리제(1~3월, 12월) 40%]</td> </tr> <tr> <td>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원유운반선(51), 석유제품운반선(52), 케미칼운반선(53)</td> <td>10knot</td> <td>15% [계절관리제(1~3월, 12월) 2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先 선박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先 감면액을 제외한 선박입출항료 (실제 최종 납부한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용</li> <li>- 선종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되, 연간 인센티브 한도(5억 원)를 초과할 경우 모든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에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간 최대 5억 원까지만 인센티브 지급 ex) 연간 인센티브 10억 발생 ⇒ 지급률 50% 적용 ⇒ 연간 총 5억</li> </ul>	선종(Port-MIS Code)	권고속도	선박입출항료 감면율	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27)	12knot	30% [계절관리제(1~3월, 12월) 40%]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원유운반선(51), 석유제품운반선(52), 케미칼운반선(53)	10knot	15% [계절관리제(1~3월, 12월) 25%]							
선종(Port-MIS Code)	권고속도	선박입출항료 감면율															
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27)	12knot	30% [계절관리제(1~3월, 12월) 40%]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원유운반선(51), 석유제품운반선(52), 케미칼운반선(53)	10knot	15% [계절관리제(1~3월, 12월) 25%]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속운항 참여 신청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li> <li>(인센티브 지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선사 위임장(대리점 신청시)</li> <li>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li> </ul>																
절 차	<table border="1"> <thead> <tr>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r> </thead> <tbody> <tr> <td>저속운항해역에서 실제 저속 입항 후 저속운항 참여 신청(포트미스)</td> <td>인센티브 금액 산정 및 검증</td> <td>인센티브 지급 신청 (포트미스)</td> <td>인센티브 지급</td> </tr> <tr> <td>선사</td> <td>UPA·선사</td> <td>선사</td> <td>UPA</td> </tr> <tr> <td>'23.1.1.~'23.12.31.</td> <td>'24.1.~2.</td> <td>'24.2.~3.</td> <td>'24.上</td> </tr> </tbody> </table>	①	②	③	④	저속운항해역에서 실제 저속 입항 후 저속운항 참여 신청(포트미스)	인센티브 금액 산정 및 검증	인센티브 지급 신청 (포트미스)	인센티브 지급	선사	UPA·선사	선사	UPA	'23.1.1.~'23.12.31.	'24.1.~2.	'24.2.~3.	'24.上
①	②	③	④														
저속운항해역에서 실제 저속 입항 후 저속운항 참여 신청(포트미스)	인센티브 금액 산정 및 검증	인센티브 지급 신청 (포트미스)	인센티브 지급														
선사	UPA·선사	선사	UPA														
'23.1.1.~'23.12.31.	'24.1.~2.	'24.2.~3.	'24.上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 12. 1. ~ 2023. 12. 31. / 선박입항일 기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052-228-5457</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정(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li> <li>「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해수부)」</li> <li>「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수부)」</li> <li>「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UPA)」 및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UPA)」</li> </ul> </li> <li>인센티브 금액 산정 시 십 원 단위 미만 절사</li> </ul>																

##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 인센티브

울산항 입항 선박의 VSR 참여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강화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사대리점</li> </ul>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항 VSR 대상 액체화물선(3천 톤 이상 외항선 중 원유·석유제품·케미칼운반선)의 저속운항선박 지원 신청(포트미스) 업무를 대행한 선사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포트미스 저속운항 지원 신청 내역의 대리점 항목에 해당 선사대리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li> <li>- 저속운항선박 지원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 선박이 저속운항을 준수했음을 확정(포트미스)받아야 함</li> </ul> </li> </ul>																
인센티브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li> <li>○ 시범운영 기간 예산 한도 : 1,800만 원</li> </ul>																
지급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사대리점에서 VSR 참여 신청 업무를 대행한 원유운반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칼운반선이 저속운항을 준수했음을 확정받을 시, 해당 저속운항(업무 대행) 1건당 3만 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인센티브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률을 적용하여 모든 선사대리점에 정률 인하여 인센티브 예산 한도까지만 지급</li> <li>- 인센티브 금액 산정 시 십 원 단위 미만은 절사</li> <li>- 저속운항 준수 판정은 포트미스 저속운항 검증 및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해수부)」에 따름</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선종(Port-MIS Code)</th> <th>준수 속도</th> </tr> </thead> <tbody> <tr> <td>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td> <td>10knot</td> </tr> </tbody> </table> <p>※ 본 선사대리점 대상 "VSR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에는 울산항 VSR 대상 선종 중 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27),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은 해당되지 않음</p>	대상선종(Port-MIS Code)	준수 속도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10knot												
대상선종(Port-MIS Code)	준수 속도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10knot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업무 대행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li> <li>○ (인센티브 지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등</li> <li>○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li> </ul>																
절 차	<table border="1"> <thead> <tr>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r> </thead> <tbody> <tr> <td>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업무 대행(포트미스)</td> <td>저속운항 신청내역, 준수여부 확인 및 인센티브 금액 산정</td> <td>인센티브 금액 확인 및 신청</td> <td>인센티브 지급</td> </tr> <tr> <td>선사대리점</td> <td>UPA</td> <td>선사대리점</td> <td>UPA</td> </tr> <tr> <td>'23.1.~3.</td> <td>'23.4.~5.</td> <td>'23.5.</td> <td>'23.5.</td> </tr> </tbody> </table>	①	②	③	④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업무 대행(포트미스)	저속운항 신청내역, 준수여부 확인 및 인센티브 금액 산정	인센티브 금액 확인 및 신청	인센티브 지급	선사대리점	UPA	선사대리점	UPA	'23.1.~3.	'23.4.~5.	'23.5.	'23.5.
①	②	③	④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업무 대행(포트미스)	저속운항 신청내역, 준수여부 확인 및 인센티브 금액 산정	인센티브 금액 확인 및 신청	인센티브 지급														
선사대리점	UPA	선사대리점	UPA														
'23.1.~3.	'23.4.~5.	'23.5.	'23.5.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운영) 2023. 1. 1. ~ 2023. 3. 31. / 선박입항일 기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052-228-5457</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규정(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li> <li>-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해수부)」</li> <li>-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UPA)」 및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UPA)」</li> </ul> </li> </ul>																

## ○ 울산항 친환경 번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울산항 번커링 산업 활성화 및 선박배출가스 대기환경 오염 축소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사</li> </ul>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항에 화물 하역(양·적하)을 목적으로 입항하여 급유를 위해 항만시설을 추가로 사용하고, 저유황연료(황 함유량 0.5% 미만)를 급유한 외항 화물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유황연료 범위 : MGO(Marine Gas Oil), Gas Oil, LSMGO(Low Sulfur MGO), LSFO(Low Sulfur Fuel Oil), MDO(Marine Diesel Oil), DSL(Diesel), LNG 등</li> </ul> </li> </ul>																
인센티브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항목 : 접안료 또는 정박료</li> </ul> </li> </ul>																
지급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요건 충족 시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UPA 제공양식)</li> <li>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 세관 발행</li> <li>Bunker Delivery Receipt : 공급업체 및 본선확인必</li> <li>화물 양·적하 작업일지(Time Sheet) : 본선확인必</li> <li>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li> </ul>																
절 차	<table border="1"> <thead> <tr>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r> </thead> <tbody> <tr> <td>선박 입항 및 하역·급유 실시</td> <td>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td> <td>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td> <td>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td> </tr> <tr> <td>선사</td> <td>선사</td> <td>UPA</td> <td>UPA</td> </tr> <tr> <td>연중</td> <td>연중</td> <td>연중</td> <td>연중</td> </tr> </tbody> </table>	①	②	③	④	선박 입항 및 하역·급유 실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연중	연중	연중	연중
①	②	③	④														
선박 입항 및 하역·급유 실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 1. 1. ~ 2023. 12. 31. / 선박입항일 기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052-228-5411</li> <li>(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계 밖 작업 등으로 항차분리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도 적용 가능</li> <li>하나의 시설에서 화물 하역과 급유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액체화물 수송선에 한하여 제도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역 전 급유 시) 접안 시각 ~ 배관 연결 시각까지</li> <li>(하역 후 급유 시) 배관 분리 시각 ~ 이안 시각까지</li> </ul> </li> <li>신조선이 외항 화물 하역 후 급유 시 제도 적용 가능</li> <li>인센티브 이용을 위한 FAQ 자료 : 별지</li> </ul>																

## FAQ 울산항 친환경 번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1

### 인센티브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Q-1

본 제도는 선박이 하역작업 전·후 급유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이 화물 하역 및 급유 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건 1	외항선 자격으로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하역 전 또는 후 급유를 위해 항만시설을 추가로 사용
조건 2	저유황연료(황 함유량 0.5% 미만) 급유 시 * MGO(Marine Gas Oil), Gas Oil, LSMGO (Low Sulfur MGO), LSFO(Low Sulfur Fuel Oil), MDO(Marine Diesel Oil), DSL(Diesel), LNG 등

Q-2

선종별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종은 액체화물 수송선(탱커선)과 이외 화물 수송 선박으로 구분하며, 선종의 범위(기준)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액체화물 수송선(탱커선)	이외 화물수송선
범위* (기준)	원유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케미칼가스 운반선, LPG·LNG 운반선, 기타 유조선	일반화물선, 산물선(벌크선), 자동차운반선, 풀컨테이너선, 세미(혼재)컨테이너선, 석탄운반선, 양곡운반선, 원목운반선, 광석운반선, 시멘트운반선, 핫코일운반선, 철강재운반선, 코일전용선, 모래운반선, 냉동·냉장선
사유	항만 내에서 하역(양·적하)과 급유가 동시에 불가능한 선박	항만 내에서 하역(양·적하)과 급유가 동시에 가능한 선박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분류 기준으로서, 위의 명시된 선종 외에는 감면 불가

Q-3

본 제도에서 말하는 “급유”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윤활유, 유압유를 넣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A

본 제도에서 언급한 “급유”는 다음과 같은 연료를 지칭합니다.

- ① Fuel Oil (Bunker A,B,C)
- ② MGO (Marine Gas Oil)
- ③ MDO (Marine Diesel Oil)
- ④ LNG (Liquefied Natural Gas)

따라서 위의 4가지 종류 외에 윤활유(LO, Lubricating Oil), 유압유(HO, Hydraulic Operating Fluid)를 넣는 작업만으로는 본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본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A

제도 수혜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기 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①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② 선용품 반입(적재) 확인 및 허가(신청)서(세관 발행)
- ③ 급유증빙서류(Bunker Delivery Receipt) - 공급업체 및 본선 확인 필수
- ④ 화물 양·적하 작업일지(Time Sheet) - 본선 확인 필수(스탬프 및 선장 서명)



2

급유 사례별 안내

2-1

항만시설 이용·급유시간 계산 관련

Q-5

선박이 특정 부두에서 하역 작업 전·후 다른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같은 부두에서 급유 작업을 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고 감면 대상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하역 전·후 같은 부두에서 그대로 급유를 실시한다면 액체화물 수송선 이외 선박은 감면이 불가능하며, 액체화물 수송선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만시설사용료가 최대 12시간까지 감면됩니다.

하역 전 급유	하역부두 접안시간부터 급유 후 양적화가 시작되는* 시점(최대 12시간) * 선박과 동 부두의 액체화물 하역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이 연결되는 시점
하역 후 급유	화물 하역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급유가 종료되는* 시점(최대 12시간) * 선박과 동 부두의 액체화물 하역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이 분리되는 시점

\* 실제 하역 및 급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시간 계산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경우 공사(052-228-5425, 5402)로 문의 요망

Q-6

하역 전 또는 후 복수의 시설을 이용하여 2회 이상의 급유를 실시했을 경우, 시설 사용시간을 총 합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하역 작업 전 또는 후 급유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 1회에 한하여 최초 12시간까지만 적용되므로, 복수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CASE 1 하역 작업 후 복수의 시설에서 급유작업을 한 경우

- ① 하역 작업 → ② 정박지 A 이용 급유 → ③ 접안시설 B 이용 급유

CASE 2 하역 전 급유를 실시하고 하역 후에도 급유를 실시한 경우

- ① 정박지 A 이용 급유 → ② 하역 작업 → ③ 접안시설 B 이용 급유

☞ 정박지 A와 접안시설 B 중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만 최초 12시간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제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선사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청

Q-7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최대 12시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항만시설을 13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12시간을 면제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나요?

A

동 지원제도를 적용하면 항만시설을 13시간 사용한 경우 급유 소요 시간만큼만 면제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 기본료가 아닌 초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① 급유를 위해 정박지(E-1)을 13시간 사용 후
- ② 화물 양·적하를 위해 민유부두(SK 4부두)를 15시간 사용

해석

E-1 정박료에 대해 급유 지원 제도를 적용하면 12시간을 면제하고 남은 1시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SK 4부두 시설(민유부두는 UPA에서 정박료 징수) 사용시간에 합산(15+1시간=16시간)하여 초과 사용료로 정산함 [16시간 = 12시간(정박료 기본료) + 4시간(초과 사용료)]

Q-8

외항 화물선이 울산항에서 화물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접안·정박시설에서 급유만 실시한 뒤 출항할 경우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울산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울산항에 급유만을 목적으로 입항한 통과선박(외항선)일 경우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상 아래 조항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6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생략)

Q-9

UPA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이 아닌 곳에서 급유를 할 경우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울산항 접안시설 중 UPA의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닌 민자시설(부두)의 경우, 아래 'CASE 2'에 해당될 경우에만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CASE 1** 민자시설(부두)에서 하역과 급유를 모두 실시한 경우

- ① 민자시설(부두) A 하역 작업 → ② 민자시설(부두) A 이용 급유

☞ '화물 하역 전 또는 후 급유'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민자시설(부두)의 경우 UPA의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②에 대한 사용료 면제 불가

**CASE 2** 민자시설(부두)에서 하역 전 또는 후, UPA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에서 급유를 실시한 경우

- ① 정박지 A 이용 급유 → ② 민자시설(부두) 하역 작업  
 ① 민자시설(부두) 하역 작업 → ② 정박지 A 이용 급유

☞ '화물 하역 전 또는 후 급유'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급유를 실시한 시설이 UPA 징수대상 시설이므로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2019.10월 기준 민자시설(부두) 현황

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주
본항·미포항	MQP-01	미포부두-01	현대중공업
	MQP-02	미포부두-02	현대중공업
온산항·신항	MBO-05	정일컨부두	JUCT
	MBO-06	효성부두	효성
	MBC-01	신항컨부두-01	UNCT
	MBC-02	신항컨부두-02	UNCT
	MBC-03	신항컨부두-03	UNCT
	MBC-04	신항컨부두-04	UNCT
	MBN-11	세방신항부두	세방
	MBN-17	대한통운신항부두	대한통운

2-2

선박의 자격 관련

Q-10

외항선이 일시적으로 내항선 자격을 취득하여 연안화물 하역 작업을 한 뒤, 외항선 자격으로서 정박·접안시설에서 급유를 했다면(혹은 이와 반대 경우라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에서 규정하는 '하역'과 '급유'는 일관되게 외항선의 자격으로서 이뤄지는 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항선 자격으로 하역 작업 후 외항선 자격으로 급유를 실시했다면(혹은 이와 반대 경우) 제도에서 규정한 일관된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운법」 및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적용

Q-11

원 자격 내항운송사업자가 일시적 외항운송사업자격을 허가 받아 외항화물을 하역한 뒤, 급유 목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외항자격 소멸(원자격 전환) 후 내항화물을 선적하여 출항했을 경우도 본 지원 제도가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역작업부터 급유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외항선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하역 후 급유 중 원 자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별로 일시적 자격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가 유효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 1 본 제도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 ① 원 자격 내항운송사업자 일시적 외항운송사업 허가 획득
- ② 외항화물 울산항에서 양하(외항선자격)
- ③ 급유 작업(최초 12시간 중 원 자격 전환/내항선자격)
- ④ 내항선화물선적 후 출항(내항선 자격)

CASE 2 본 제도가 유효한 경우

- ① 원 자격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울산항 입항 및 내항화물 양하(내항선자격)
- ② 일시적 외항운송사업허가 획득
- ③ 외항화물 적하(외항선자격)
- ④ 급유작업(외항선자격) 후 출항

Q-12

울산항에서 건조된 신조선 선박이 최초 출항 전 울산항 부두에서 화물 하역 작업 전·후 정박·접안시설에서 급유를 했다면 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에 따라, 출항을 하지 않은 선박은 외항선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제도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항에서 건조된 신조선이 접안·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할 경우(급유목적 이용 포함)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상 다른 조항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급유작업 취소·지연·중단 관련

Q-13

동일한 접안시설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중단하고 급유를 실시한 뒤, 다시 하역 작업을 실시한다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울산항 내에서 ‘액체화물 수송선’의 경우 하역과 급유 작업이 동시에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본선 확인된 화물 양·적하 작업일지(Time Sheet)/급유증빙서류(Bunker Delivery Receipt)/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 급유시간(면제시간)을 산정합니다.

액체화물 수송선 이외 선박의 경우 하역과 급유작업이 동일한 시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Q-14

본선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급유 중단 후 재급유 시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명령, 급유공급선박의 고장 등 본선의 귀책 외의 사유로 급유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급유를 실시할 경우, ‘급유 중단 - 재급유’ 작업이 연속으로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급유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12시간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선의 귀책으로 인하여 급유가 중단·지연될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감면되며, 급유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요건 미달로 인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CASE 1** 급유 중단 및 피항 후, 재 입항하여 바로 급유를 실시한 경우

- ① 정박지 A 급유 중 중단 → ② 피항 → ③ 재입항 → ④ 정박지 또는 접안시설 B 재급유

☞ 본선 귀책 외의 사유로 급유 중단, 피항 후 재입항하여 바로 재급유를 실시하였을 경우,  
①, ② 소요시간 합산 최대 12시간까지 면제 가능

**CASE 2** 급유 중단 및 피항 후, 재 입항하여 하역 작업 후 급유를 실시한 경우

- ① 정박지 A 급유 중 중단 → ② 피항 → ③ 재입항  
→ ④ 접안시설 B 하역 → ⑤ 접안시설 B 급유

☞ 본선 귀책 외의 사유로 급유 중단, 피항 후 재입항하여 바로 급유를 하지 않고  
중간 작업 후 급유를 실시하였을 경우, ① 또는 ⑤ 면제 택 1

**Q-8**

탱크클리닝 작업을 위하여 급유·하역 작업의 항차분리가 발생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나요?

**A**

탱크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항차가 분리되었으나, 두 항차에 걸쳐 급유 및 하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Q-16**

본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혹은 실수로)으로 제도 적용을 신청하지 않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했는데, 향후 수정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받거나 본 지원 제도를 적용한 시설사용료로 재 납부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인력·자원 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월 세입을 마감하는 익월 5일까지 수정 신청을 할 때만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

## ○ LNG연료추진선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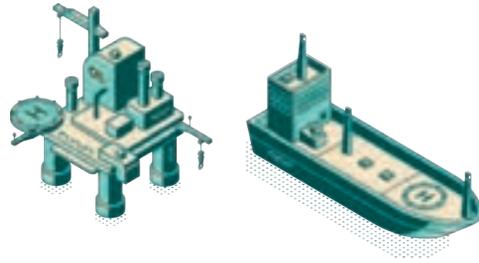
울산항 내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및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전통 선박 연료 대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연료 추진 선박 대상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 또는 내항선																
인센티브 유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감면항목 : 접안료, 정박료																
지급항목	○ 외항화물선/내항선 여부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차등 - (외항화물선) 20% / (내항선) 100% * 외항화물선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제출서류	○ 선박등록증서, LNG연료추진 엔진 탑재 증빙서류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table><thead><tr><th>①</th><th>②</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LNG연료추진선 입항</td><td>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td><td>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td><td>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td></tr><tr><td>선사</td><td>선사</td><td>UPA</td><td>UPA</td></tr><tr><td>'23.1.1.~'23.12.31.</td><td>'23.1.1.~'23.12.31.</td><td>'23.1.1.~'23.12.31.</td><td>'23.1.1.~'23.12.31.</td></tr></tbody></table>	①	②	③	④	LNG연료추진선 입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①	②	③	④														
LNG연료추진선 입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시행기간	○ (외항화물선)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 외항화물선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 (내항선)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1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3(내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 ○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실증 선박 인센티브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 활성화 및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항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실시하는 항만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사, 부두운영사 등 항만 이용자</li> </ul>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항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벙커링)에 대한 실증을 실시하는 사업자 및 실증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li> <li>(2) 울산항 관리기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반 허가·승인 등을 득한 경우</li> </ul> </li> </ul> <p>※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 '항만시설 사용목적' 코드가 급유(O6)에 해당</p> <p>※ '친환경 선박연료'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거) 「친환경선박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중에 관한 규칙」</li> <li>(범위) LNG, C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li> </ul>												
인센티브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li> <li>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li> </ul> </li> </ul>												
지급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증기간 동안 발생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실증을 실시한 항차에 한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 <th>사용료</th> <th>감면율</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td> <td>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로표지사용료</td> <td>50%</td> <td>항차 당 5천만원</td> </tr> <tr> <td>실증사업장 제공 부두운영사</td> <td>항만시설전용사용료</td> <td>20%</td> <td>실증 1회 당 최대 1억원</td> </tr> </tbody> </table>	기준	사용료	감면율	한도	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로표지사용료	50%	항차 당 5천만원	실증사업장 제공 부두운영사	항만시설전용사용료	20%	실증 1회 당 최대 1억원
기준	사용료	감면율	한도										
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로표지사용료	50%	항차 당 5천만원										
실증사업장 제공 부두운영사	항만시설전용사용료	20%	실증 1회 당 최대 1억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사업 선정 및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수행실적 관련 제반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선작업일지(Time Sheet), 친환경 선박연료 해당여부 증빙서류 등</li> </ul> </li> <li>기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 불필요(증빙서류로 갈음)</li> </ul> </li> </ul>												



**절 차**



**시행기간**

- 해양수산부,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연구사업)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5774
- (인센티브 제도)
  - LNG·수소·암모니아 :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052-228-5411
  - 메탄올 :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5418
- (항만시설사용료)
  - 선박료 :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3(내항선입출항)
  - 항만시설전용사용료 :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2-228-5445(부지, 수역), 5442(야적장, 건물)

**기타사항**

- 근거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2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 참고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38호(2023.1.27.) '2023년도 LNG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인센티브

울산항 친환경 탄소중립 항만 조성 및 울산항 이용 고객의 AMP 이용 활성화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사</li> </ul>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항에 기항하여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이용하는 외항선</li> </ul>																
인센티브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 : 항만시설 사용료감면형 - 즉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li> <li>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li> </ul> </li> </ul>																
지급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요건을 충족한 외항선이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 대해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15% 감면</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P 사용계획(설비 사용 전) : [별지] 사용계획서(양식)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사용 3일 전까지 인센티브 담당자에게 제출</li> </ul> </li> <li>사용 전력량 증빙 서류(설비 사용 후)</li> <li>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li> </ul>																
절 차	<table border="1"> <thead> <tr>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r> </thead> <tbody> <tr> <td>AMP 사용계획 제출 및 AMP 이용</td> <td>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td> <td>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td> <td>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td> </tr> <tr> <td>선사</td> <td>선사</td> <td>UPA</td> <td>UPA</td> </tr> <tr> <td>'23.1.1.~'23.12.31.</td> <td>'23.1.1.~'23.12.31.</td> <td>'23.1.1.~'23.12.31.</td> <td>'23.1.1.~'23.12.31.</td> </tr> </tbody> </table>	①	②	③	④	AMP 사용계획 제출 및 AMP 이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①	②	③	④														
AMP 사용계획 제출 및 AMP 이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85</li> <li>(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li> <li>「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li> <li>「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li> </ul> </li> <li>AMP 사용계획서 양식 : 별지 3 참조</li> </ul>																

## 양식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사용계획서

### I 기초정보

- 선사명 :
- 선박명 :
- 입출항 계획 : (입항) 2023.00.00. 00:00 ~ (출항) 2023.00.00. 00:00
- 마지막 AMP 사용일 :

### II 사용계획

- 사용설비 : 울산항 00부두 00선석
- 설비사용 : 2023.00.00. 00:00 ~ 00:00 총 00시간
- 세부사용계획(예시)

구분	시간	비고
선상회의	09:00 ~ 10:00	
설비점검	10:00 ~ 10:30	
전력공급	10:30 ~ 17:30	
연결해제 및 정리	17:00 ~ 18:00	

### III 요청사항

- (예시) 방선희망자 신청서 접수 등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85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